

보도 일시 (인터넷) 2022. 11. 1.(화) 국무회의 종료시 (지 면) 2022. 11. 1.(화) 국무회의 종료시 ※ 별도 문자 안내 예정	배포 일시 2022. 10. 31.(월) 08:30
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	책임자 과 장 하유경 (044-203-6604) 담당자 서기관 민미홍 (044-203-6653)

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**-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명시 및 대학 등의 규정 정비 지원근거 마련 -**

주요 내용

- 학술진흥법 개정('20.12.22)에 따라 '시행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'의 종류와 범위를 부당한 중복게재, 조사방해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
 -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규정 정비 지원 근거 마련
-
- 교육부는 11월 1일(화), 국무회의에서 「학술진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, 조사방해행위,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하였다.
 - 법률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*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「학술진흥법」을 개정('20.12.22)한 바 있다.
 - *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위·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표시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 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위법령인 「학술진흥법 시행령」을 개정한 것이다.
 - 종전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에 근거가 있었으며, 동일한 내용을 상향입법 추진한 것이다.
 - 한편,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·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개선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었다.

【붙임】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

담당 부서	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	책임자	과 장	하유경 (044-203-6604)
		담당자	사무관	민미홍 (044-203-6653)

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5조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</u> <u>2.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·대학 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(이하 “연구부정행위”라 한다)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(危害)를 가하는 행위</u> <u>3.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</u>
<p><u>제15조(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)</u></p>	<p><u>제15조의2(연구윤리지침의 작성</u></p>

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연구부정행위의 범위

2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6조(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)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17조(대학등의 조치)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·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,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등) ① -----
-----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(이하 “연구윤리지침”이라 한다)-----

-----.

1.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) ----- 법 제15조제3항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대학등의 조치) ① -----
----- 연구윤리지침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교육부장관은 자체 연구윤리

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
하기 위하여 대학등에 다음 각
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
검토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
2.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
사항에 대한 정비 지원